<bof>

1. [%1](#1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2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3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corporate tax declaration-related documents)[n]
   1. [%2](#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3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n]
   2. [1]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의무)(#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의무)(#3 Obligation to prepar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T,r2<n>]
      1. [1x1]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3 Obligation to submi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n]
         1. {1}(#1 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119).)(#2 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Corporations with changes in shareholders (including employees and contributors) or changes in the amount of contributions by shareholders during the fiscal year must submi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within the corporate tax base return filing deadline.){n}
      2. [1x2](#1 가산세규정)(#2 가산세규정)(#3 Penalty tax regulations)[r1x1<n>]
         1. {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Failure to submi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submitting it with omissions in changes, or if the submitted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contains omissions, errors, or unclear information regarding essential details, may result in penalty taxes being imposed.){n}
   3. [2](#1 제출대상 법인)(#2 제출대상 법인)(#3 Corporations that requires submission)[n]
      1. {1}(#1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2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3 Domestic corporations with changes in stocks or ownership interests during the fiscal year (Domestic corporations: Joint-stock companies, limited companies, general partnerships, limited partnerships, associations, etc.).){r1<n>}
   4. [3](#1 제출제외 법인(법령§161ⓛ))(#2 제출제외 법인)(#3 Corporations exempt from submission)[T]
      1. {1}(#1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① 각 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2 =조합법인 (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입니다.))(#3 =Cooperative corporations (However, central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are required to submit)){n}
      2.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9⑲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대상))(#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단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 대상입니다.))(#3 =Investment companies, investment limited companies, investment partnerships, and investment-specialized compan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e generally exempt from submission, except for privately-placed investment companies.){n}
      3. {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⑤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인)(#3 =Corporations regulated by the regulations related to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n}
      4. {4}(#1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로 구성된 법인)(#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로 구성된 법인)(#3 =A corporation whose shareholders are composed of small shareholders of public institution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listed companies as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n}
      5.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3 =Redevelopment associations under Article 38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n}
   5. [4](#1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2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3 Submission deadline and jurisdiction)[T,r1<n>,r2<n>]
      1. {1}(#1 =법인세법§60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3 =Within the corporate tax base return filing deadline){n}
      2. {2}(#1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2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3 =Submit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payment){n}
   6. [5](#1 제출방법(법법§119))(#2 제출방법)(#3 Submission method)[n]
      1. [5x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3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n]
         1. {1}(#1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Corporations with changes in stocks and others during the fiscal year must submi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r1<n>,r2<n>}
      2. [5x2](#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3 Statement of Transfer of Shares and Ownership Interests)[n]
         1. {1}(#1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내역을 기재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내역을 기재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In cases where the changes in stocks or other matters are due to transfers, the "Statement of Transfer of Shares and Ownership Interests" that specifies the transfer details of stocks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must be submitted.){r1<n>,r5x3<n>}
      3. [5x3](#1 주식등의 변동이란)(#2 주식등의 변동이란)(#3 Definition of changes in stocks and others)[n]
         1. {1}(#1 주식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령§161⑦).)(#2 주식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3 Changes in stocks and others refer to cases where shareholders, ownership ratios, total nominal value of held shares, total amount of held contributions, etc., change due to transactions, capital increases, capital reductions, inheritance, gifts, and contributions.){r1<n>,r5x1<n>,e5x2<여기서>}
      4. [5x4](#1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2 인터넷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3 Online filing and electronic submission)[n]
         1. {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매체로 제출 가능합니다.)(#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인터넷 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매체로 제출 가능합니다.)(#3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can be submitted through online filing or electronic means. Corporations with a large number of shareholders who manage shareholder changes electronically can submit the statement electronically after receiving guidance on suitable data formats and precaution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s IT department.){r1<n>,r5x1<n>}
      5. [5x5](#1 신규법인의 경우)(#2 신규법인의 경우)(#3 For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s)[n]
         1. {1}(#1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s do not need to submi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if there were no changes in stocks during the fiscal year of establishment since the shareholder registry is entered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However, if there were changes in stocks during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even for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s,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must be submitted within the corporate tax base return filing deadline.){r1<n>,r5x1<n>}
   7. [6](#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법§119②,법령§161②))(#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3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T,r1<n>]
      1. [6x1](#1 주권상장법인주주)(#2 주권상장법인주주)(#3 Shareholders of stock-listed corporations)[n]
         1. {1}(#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등)(#2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등)(#3 Shares owned by shareholders other than controlling shareholders (including their related parties) in a stock-listed corporation that prepares the shareholder registry at least once during the fiscal year.){n}
      2. [6x2](#1 소액주주주식)(#2 소액주주주식)(#3 Stocks held by small shareholders)[n]
         1. {1}(#1 주권상장법인 이외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2 주권상장법인 이외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3 Stocks held by small shareholders of corporations other than stock-listed corporations){n}
      3. [6x3](#1 주권상장법인)(#2 주권상장법인)(#3 Stock-listed corporations)[n]
         1. {1}(#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을“주권상장법인”으로 합니다.)(#3 Stock-listed corporations or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are considered "stock-listed corporations"){e6x1<여기서>}
      4. [6x4](#1 제출의무면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2 제출의무면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3 Procedure for preparing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for cases exempt from submission requirements)[n]
         1. {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 및 출자지분 변동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합니다(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 및 출자지분 변동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합니다(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3 In cases where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is exempted for shareholders and changes in capital contributions, when preparing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you should include all of them in the "total of shareholders exempt from submission obligation". However, for shareholders not exempt from submission obligation, individual details must be provided and submitted.){n}
   8. [10](#1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 개념 및 판단방법)(#2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 개념 및 판단방법)(#3 Definition and determin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small shareholders)[n]
      1. [11](#1 지배주주의 개념(법령§43⑦))(#2 지배주주의 개념)(#3 Defini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n]
         1. {1}(#1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말하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는 제외합니다. (법령§43⑦))(#2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말하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는 제외합니다.)(#3 It means a shareholder who owns 1% or more of the total issued shares or total contributions of a corporation, excluding those in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e6x1<여기서 지배주주란>, r14<n>}
      2. [12](#1 소액주주의 개념(법령§161④))(#2 소액주주의 개념)(#3 Definition of small shareholders)[T, e6x2<여기서 소액주주란>,r14<n>]
         1. [12x1](#1 소액주주의 정의)(#2 소액주주의 정의)(#3 Definition of small shareholders)[n]
            1. {1}(#1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을 말함(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법령§161④))(#2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을 의미합니다.(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3 Small shareholders refer to shareholders who own shares or contributions that are less than 1% of the total issued shares or total contributions, except for those in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n}
         2. [12x2](#1 소액주주의 요건)(#2 소액주주의 요건)(#3 Requirements for small shareholders)[n]
            1. [12x3]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2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3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and KOSDAQ-listed companies)[n]

{1}(#1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코스닥상장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2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코스닥상장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를 포함합니다.)(#3 Shareholders with a total nominal value of held shares less than KRW 300 million and a total market value of less than KRW 10 billion are considered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for KOSDAQ-listed companies, shareholders who acquired shares before the KOSDAQ listing with a total nominal value of KRW 5 million or less and those who transferred shar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the KOSDAQ market are also included as minority shareholders.){n}

* + - * 1. [12x4](#1 유가증권시장･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3 When not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or KOSDAQ market)[n]

{1}(#1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2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3 Shareholders whose total nominal value of held shares or total contributions is KRW 5 million or less){n}

* + 1. [14](#1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 판단방법(법령§161⑤))(#2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 판단방법)(#3 Determining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small shareholders)[T,e11<n>,e11<n>,e12<n>]
       1. {1}(#1 =액면금액, 시가 또는 출자총액：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2 =액면금액, 시가 또는 출자총액：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합니다.)(#3 =Nominal value, market value, or total contributions: Based on the status as of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fiscal year){n}
       2. {2}(#1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으로 본다.)(#2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으로 봅니다.)(#3 =If a corporation falls under the categor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t any time between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fiscal year, it is considered a controlling shareholder.){n}
       3. {3}(#1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2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3 =If a corporation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small shareholders at any time between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fiscal year, it is not considered a small shareholder.){n}
  1. [15](#1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법법§75의2②))(#2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3 Penalty tax for non-compliance)[T,e16<n>]
     1. [15x1](#1 가산세규정 적용)(#2 가산세규정 적용)(#3 Application of penalty tax regulations)[n]
        1. {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합니다.)(#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누락 또는 오류 기재 등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합니다.)(#3 If a domestic corporation that is required to submi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fails to submit it, submits it with omissions, or submits it with missing or erroneous information, making it impossible to confirm changes in stock ownership, a penalty tax of 1% of the missing, omitted, or unclear nominal value will be imposed even if there is no calculated tax amount.){n}
     2. [15x2](#1 무액면주식의 경우 액면금액 적용방법)(#2 액면가치 없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액면금액 적용방법)(#3 Calculation method for shares issued without a nominal value)[n]
        1. {1}(#1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의미)(#2 액면가치 없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3 In the case of shares issued without a nominal value, it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capital of the issuing corporation by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n}
     3. [15x3] (#1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시 가산세적용)(#2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시 가산세적용)(#3 Application of penalty taxes for non-submission, omission, or unclear submission)[n]
        1. {1}(#1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2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합니다.)(#3 A penalty tax equivalent to 1% of the nominal value or contribution amount of the shares or ownership interest not submitted, omitted, or submitted unclearly will be collected as corporate tax.){n}
     4. [15x4](#1 가산세 감면)(#2 가산세 감면)(#3 Penalty tax reduction)[n]
        1. {1}(#1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를 5/1,000으로 함)(#2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1%에서 0.5%로 합니다.)(#3 If submitt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deadline has passed, the addtional tax rate will be reduced from 1% to 0.5%.){n}
     5. [15x5](#1 가산세한도)(#2 가산세한도)(#3 Penalty tax limit)[n]
        1. {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명세서 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49①).)(#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명세서 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A penalty tax of up to 100 million won (50 million won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However, the penalty tax limit provision does not apply in cases of intentional violation of the statement submission obligation.){n}
  2. [16](#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법령§161⑥))(#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3 Required information o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T,r15<n>]
     1. {1}(#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2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3 =Names of shareholders or corporation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s, or identification numbers){n}
     2. {2}(#1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2 =주주 등 주식 등의 보유현황)(#3 =Ownership status of shares and other items for shareholders){n}
     3. {3}(#1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상황(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해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것))(#2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상황(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해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것입니다.))(#3 =Changes in ownership of shares and other items during the fiscal year (changes in shareholders, ownership ratios, total nominal value of held shares, and total amount of held contributions due to transactions, capital increases, capital reductions, inheritance, gifts, contributions, etc.).){n}
  3. [17](#1 기타 유의사항)(#2 기타 유의사항)(#3 Other considerations)[r5<n>]
     1. {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디스켓)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식의 우측상단에 전산매체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USB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식의 우측상단에 전산매체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If you submi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on a USB drive or similar media, please indicate on the manually submitted corporate tax declaration form attached to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in the upper right corner that it was submitted electronically.){n}
  4. [18](#1 서식 및 작성요령)(#2 서식 및 작성요령)(#3 Format and guidelines)[n]
     1. [19](#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3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n]

{1}텍스트, 영수증,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r%2-1<n>,r5<n>}

* + 1. [20](#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1))(#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1))(#3 $(Guidelines for preparing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 Part 1))[n]

{1}텍스트, 폰트, 번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r%2-1<n>,r5<n>}

* + 1. [2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2))(#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2))(#3 $(Guidelines for preparing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hip of Stocks and Others - Part 2))[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r%2-1<n>,r5<n>}

* + 1. [22](#1 $(작성사례))(#2 $(작성사례))(#3 $(Example))[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1. [23](#1 $(해설))(#2 $(해설))(#3 $(Explanation))[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문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22<n>}

* + 1. [24](#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3 $(Statement of Transfer of Shares and Ownership Interests))[n]

{1}텍스트, 영수증,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r5<n>}

* + 1. [25](#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작성방법))(#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작성방법))(#3 $(Guidelines for the Statement of Transfer of Shares and Ownership Interests))[r5<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boe>